

의안번호	제 29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##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2년 9월 7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칩

#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9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22년 9월 7일  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민선 8기 도정 비전의 조기 실현과 조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도정 현안 수요 등을 반영한 기구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<분장사무 조정>

- 신설
  - 의료비후불제 추진에 관한 사항 : 보건복지국
  - 청주국제공항 관광 연계 사업 : 문화체육관광국
  -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위원회 구성·운영 : 문화체육관광국
- 이관
  - 공항활성화 지원 및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 : 문화체육관광국 → 균형건설국

## 3. 의안전문 : 붙임

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## 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## 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##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8. 의료비후불제 추진에 관한 사항

제1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10. 청주국제공항 관광 연계 사업

11.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위원회 구성·운영  
제13조제20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제21호부터 제25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20. 공항활성화 지원 및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

인한 부서 통·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보건복지국) 보건복지국장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7.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8. (생 략)</p> <p>제12조(문화체육관광국) 문화체육 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.</p> <p>1. ~ 9. (생 략)</p> <p><u>10. 공항활성화 지원 및 항공산 업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11. ~ 13. (생 략)</p> <p>제13조(균형건설국) 균형건설국장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19.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20. ~ 24. (생 략)</p>	<p>제8조(보건복지국) 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8. 의료비후불제 추진에 관한 사항</u></p> <p>9. (현행 제8호와 같음)</p> <p>제12조(문화체육관광국) ----- ----- --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0. 청주국제공항 관광 연계 사 업</u></p> <p><u>11.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종합 계획 수립 및 추진위원회 구 성·운영</u></p> <p>12. ~ 14. (현행 제11호부터 제 13호까지와 같음)</p> <p>제13조(균형건설국) ----- -----.</p> <p>1. ~ 19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20. 공항활성화 지원 및 항공산 업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1. ~ 25. (현행 제20호부터 제 24호까지와 같음)</p>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【지방자치법】

제125조 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~ ⑥ (생략)

### 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】

제9조 (시·도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도 본청에 두는 실·국·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실·국·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·국·본부의 개편,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## 비용추계서 첨부제의 사유서

### ○ 첨부제의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제1호

### ○ 사 유

- 본 조례안은 민선 8기 도정 비전의 조기 실현과 조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도정 현안 수요 등을 반영한 기구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

### ○ 작성자

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이수현